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0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6누530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. 6. 16. 선고 2015구합79482 판결

변 론 종 결 2016. 11. 18.

판 결 선 고 2016. 12. 9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 : 피고가 2014. 6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(가산세 포함) 23,703,270원 및 지방교육세(가산세 포함) 4,393,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 :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06

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필곤

판사 손삼락

판사 김용하